

## 아동학대와 방임의 개념 및 사회적 개입에 대한 일반인과 전문가 집단 인식조사

윤 혜 미\*

- I. 연구목적과 배경
- II. 선행연구의 고찰
- III. 연구설계
- IV. 결과분석
- V. 결론 및 논의

### I. 연구목적과 배경

아동학대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모든 사회에서 발견되어 왔지만 현대사회의 경쟁적 구조는 가족원의 가중된 심리적 압박과 소외를 가져와 아동학대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양육의 사회적 성격을 중시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개입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적절한 치료나 예방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아동학대를 전담할 공권력이 있는 기관이나 법적 근거도 미약할 뿐 아니라 개념적 합의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 자행되는 아동학대의 심각성 못지않게 1989년 유엔 아동권리조약의 비준, 1996년 OECD 가입 등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변화는 경제뿐 아니라 사회제도 측면에서도 선진국의 기준을 도입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적절한 아동 양육과 보호의 기준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게 되었다. 국내적으로는 1996년에 가정 폭력추방을 위한 '가정폭력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정운동이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데 이 법에서도 아동에 대한 가정내 폭력문제를 다루고 있고 아동복지법의 개정도 거론되는 등 아동학대에 대한 구체적 접근의 필요성이 어느정도 공론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인식의 발전과 법의 제정에 따른 실질적인 대책마련에 앞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선결과제가 우리 문화에서 수용될 수 있는 아동학대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일 것이다.

\*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본 연구는 부모를 중심으로 한 우리사회의 일반 구성원과 아동과 밀접히 일하는 전문가들이 동의할 수 있는 아동학대와 방임의 개념을 도출하고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개입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며, 또 전문적 개입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 집단간의 견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발견하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의 고찰

### 1. 아동학대 개념 규정의 논점

어떤 현상이라도 우선 그 개념이 정의된 이후에야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개념정의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아동학대나 방임의 개념 정의는 선행 연구를 통해서 매우 다양한 형태가 발견되지만 이들 자료를 횡적으로 비교하여 그 중 어느 하나가 유일하게 적합한 정의라고 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아동학대 개념의 규정에는 학대자의 고의성(의도), 학대행위가 아동에게 미친 결과, 그 행위에 대한 가치판단인 사회일반의 평가와 심판의 기준이라는 몇가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논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 지금까지의 연구가 논란의 여지가 비교적 적은 신체적 학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상대적으로 정의하기가 모호한 정서적 학대와 방임은 그 중요성과 심각성에 반해 잘 연구되지 않았다는 것도 학대개념을 규정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학대행위의 평가와 판단의 기준이라는 두가지 요소는 학대를 판정할 때 학대자의 고의성과 학대의 결과중 어느 것에 기준을 둘 것인가의 문제로서 폭력의 사용에 대한 문화적 특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회에 따라 또는 문화에 따라 폭력에 대한 평가와 기준이 각기 다르다. 아동학대의 개념은 한 사회가 어떤 양육방법을 정상적 또는 비정상적이라고 규정하는가에 따르게 되는데 아동양육방법은 여러가지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개인적 요소들의 산물이기도 해서 한 문화나 사회가 정상적이라고 여기는 양육방법이 다른 문화나 사회, 또는 다른 시대에 있어서는 비정상적이라고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동의 신체에 뚜렷한 위해가 가해졌을 때(명이나 회초리 자국등) 서구문화에서는 이를 아동학대로 간주하고 부모 의도의 선의여부는 그 행위를 학대로 규정하는데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하는 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유교문화권에서는 아동이 비록 신체적 위해를 입었더라도 부모의 의도가 훈육에 있었다면 허용될 수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sup>1)</sup> 이처럼 전통적으로 자녀를 부모의 엄격한 신체

1) 윤혜미, “아동학대 및 방임사례와 신고제 도입에 관한 학부모 태도조사”, 『한국

적 정신적 통제하에 두는 것을 올바른 가정교육으로 생각하고 이 과정에서 체벌이 훈육의 한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문화적 환경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학대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고 일부 아동을 부모의 학대로부터 보호 받을 길이 없는 절박한 상황에 두는 결과를 가져온다.<sup>2)</sup>

혹자는 이를 학대와 학대의 허용도에 대한 우리사회의 이중적 태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준호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폭력은 폭력을 배태시키는 구조적인 요인이 우리 사회에 있기 때문인데 이는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개념으로서의 폭력은 거부하면서도 구체적인 차원의 폭력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이중성의 온존이라고 하였다.<sup>3)</sup> 즉 행위자체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특정한 학대행위가 발생할 경우 전통적 관습적 묵인하에 학대가 아니라고 거부하는 문화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문화적인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특정 문화의 모든 행동규범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sup>4)</sup> 적어도 아동학대에 관한 한 문화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아동양육의 규범을 넘어서는, 바람직한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과학적 시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아동보호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아동학대의 개념규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할 것이다.

## 2.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를 위한 사회적 개입

Garbarino<sup>5)</sup>는 아동의 양육이 부모를 포함한 대가족과 그 지역사회에 의해 공유되었던 과거와 달리 현대의 도시화된 생활은 가족을 소외시키고 있으므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조치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1960년대부터 아동보호서비스(Child Protective Service)를 통해 국가가 아동과 부모사이에 개입하여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인 일이라고 생각되고 있다. 비교적 우리와 유사한 유교문화권에 속하는 대만의 경우도 1988년

『아동복지학』, 3, 한국아동복지학회, 1995, pp. 169-203; Hong and Hong, "Comparative Perspectives on Child Abuse and Neglect," *Child Welfare*, LXX, 1991, pp. 463-475.

2) 고성혜, "아동학대 개념 규정 및 아동학대에 대한 모자녀의 지각성향",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1991.

3) 채혜정, "아동학대개념에 대한 부모, 자녀, 전문가의 지각",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1993; 안동현, "한국인의 아동학대에 대한 태도", 대한신경정신의학술회의, 1994; 김준호, 『한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4) 안동현 외, 앞의 글, 1994.

5) Garbarino, J., "The social construction of child abus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45, 175, pp. 363-371.

## 아동학대와 방임의 개념 및 사회적 개입에 대한 인식조사

부터 “중화어린이기금”을 통해<sup>6)</sup>, 그리고 일본도 94년부터 “아동학대 옴부즈맨제도”를 통해<sup>7)</sup>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개입은 아동의 부모나 주양육자가 적극적으로 역할수행을 거부하거나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할 때 국가가 모든 아동의 “부모”가 되어 아동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가치판단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Kadushin과 Martin은 이를 “유기, 학대, 착취 또는 거부된 아동에 대한 서비스”라고 정의하였다.

아동학대예방과 치료를 위한 이러한 제도 수립에 있어서는 사례발견이 매우 중요한 기본요소가 될 것이므로 사례발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과, 아동학대문제를 다룰 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욕구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먼저 광범위한 법적 권위가 부모의 “자연적 권리”에 우선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를 보는 시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Harding은 아동보호의 두가지 모델로 아동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만 국가가 개입하는 私生活중시 모델(Privacy Model)과 아동이 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언제나 개입하는 초기 공격적 개입 모델(Early Aggressive Intervention Model)을 제시한 바 있다<sup>8)</sup>. 그런데 어떤 모델이 개입의 기초가 되는가 하는 것은 역시 그 사회의 문화적 배경과 사회일반의 수용가능성이 숙고되어야 하므로 개입의 방향과 강도에 대한 합의 도출작업이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 3. 선행연구의 동향

아동학대개념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자들이 노력해왔으나 어느 사회에나 통용되는 한가지 정의를 찾을 수는 없다. 외국의 연구로는 Young과 Polansky의 초기 작업을 거쳐 Giovannoni와 Becerra, Hutchinson, Stein, Zurabin 등의 작업과 Gelles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개념규정 작업 등을 들 수 있다<sup>9)</sup>.

국내에서는 학대사실의 여부와 빈도를 조사하거나 학대의 원인에 대한 조사,

6) 이배근, “아동학대방지법 시안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 1993.

7) 조선일보, 1994년 3월 2일자.

8) Harding, L., *Perspectives in child care policy*, London, Longman, 1991.

9) Young, S., *Wednesday's children: a study of child neglect and abuse*, New York: McGraw-Hill, 1964; Giovannoni, J. and Becerra, R., *Defining child abuse*, New York: Free Press, 1979; Gelles, R. J., “Problems in defining and labeling child abuse” in R.H. Starr(ed.), *Child abuse prediction-policy implications*, Cambridge: Balliger Publishing co., 1982; Hutchinson, E. D. “Child maltreatment: can it be defined?”, *Social service review*, 6, 1990, pp 60-78.; Stein, T. J. “The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Social service review*, 58, 1984, pp. 302-314; Zurabin, S. J. “Research definitions of child abuse and neglect,” in R. H. Starr and D. Wolfe(eds), *The effects of child abuse and neglect*, New York: Guilford, 1991.

학대받은 아동의 심리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졌으며<sup>10)</sup> 1990년대에 들어와서야 학대개념에 대한 소수의 연구가 발견된다. 고성혜는 교사와 정신과의사를 대상으로 하여 한국에서의 아동학대개념을 규정하려 하였고 이영희<sup>11)</sup>는 아동상담소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나 후자의 경우 표본의 수가 너무 한정되어 있고 서로 사용한 척도가 달라 비교가 불가능하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김연미<sup>12)</sup>는 정서적 학대가 신체적 학대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고 안동현<sup>13)</sup>은 방임이 상당히 심각한 학대로 간주되고 있다고 하여 아동학대의 개념과 관련하여 연구마다 서로 다른 개념정의와 결과가 도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들은(안동현의 연구 제외) 특정한 행위묘사를 중심으로 한 Strauss의 Conflict Tactics Scale과 같은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그러한 행동이 일어난 게 된 전후상황(context)을 배려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연구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가능한 한 극복하고 사회적으로 합의될 수 있는 아동학대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모호하고 논란의 여지가 많은 방임과 학대의 구분,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의 구분등 비교적 광의의 의미로 아동학대를 보고있으며 전후상황이 어느정도 설명된 척도를 사용한다. 단, 성적 학대는 아동학대의 한 유형이지만 타 유형의 아동학대가 사회문제로 파악되는데 반해 성적학대는 범죄로 취급될만큼 그 의미의 차이가 크며 개념의 민감성 때문에 본연구에서 채택한 연구방법으로 다루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어 후속연구를 기대하며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다.

이외에 아동학대와 방임이라는 개념과 사회적 개입의 필요성 및 개입방향은 사회적, 경제적, 역사적 상황 뿐만 아니라 정의를 내리는 사람의 전문직업적 상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사회적 개념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자녀를 둔 일반인과 다양한 전문인 집단을 포괄함으로써 그 차이를 규명할 수 있게 하였다.

10) 주영희, “가출아동을 통한 학대에 대한 조사연구”, 『사회복지』, 80, 1984, pp. 71-133; 안동현·홍강의, “한국에서의 아동구타현황”, 『정신건강연구』, 6, 한양대학교, 1987, pp. 53-65; 김광일·고복자, “아동구타의 발생률조사”, 『정신건강연구』, 6, 한양대학교, 1987, pp. 66-81; 유춘식, “아동권익보호신고소를 중심으로 한 아동학대 현황”, 『아동문제에 관한 연구보고서』, 14, 1987, pp. 7-36; 이소희, “학대부모의 양육행동 분석”, 『숙명여대 아동연구』, 7, 1992, pp. 141-154.

11) 이영희, “아동학대 범위와 기준마련”, 『아동문제에 관한 연구보고서』, 18, 서울시립 아동상담소, 1992, pp. 63-74

12) 김연미, “아동학대에 관한 일반인의 인식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0.

13) 안동현 외, 앞의 글, 1994.

### Ⅲ. 연구설계

####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 네가지이다.

- 연구문제 1: 일반인과 전문가 집단(의사, 사회복지사, 교사)의 아동학대 개념규정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아동학대개념의 지각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3: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개입 필요성과 개입방향에 관한 인식에는 집단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4: 아동학대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과 개입방향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무엇인가?

#### 2. 조사도구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child maltreatment) 개념을 유형별로 방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로 나누고 정서적 학대는 비언어적 정서학대와 언어적 정서학대로 구분하였다. 각 개념에 대한 본 조사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임: 아동에게 의식주와 의료적 보호등 적절한 보호가 주어지지 않거나 거부되는 경우와 지도감독의 결여등으로 아동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 아동의 안전이나 건강, 학교생활에 대한 무관심과 비행방조, 애정소홀등으로 구성된다.

(2) 신체적 학대: 아동의 신체에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하는 고의적인 또는 우발적인 양육자의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 아동의 행동에 대한 양육자의 대응행동을 포함한다.

(3) 정서적 학대: 직접적인 신체 손상을 초래하지는 않으나 비방, 위협하여 아동에게 고통을 주는 행동과 언어로 여기서는 비언어적 정서학대와 언어적 정서학대로 나누어 본다. 비언어적 정서학대는 감정에 치우친 일관성 없는 태도나 아동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모욕감과 불안감을 주는 행동을 말하며 언어적 정서학대는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말로 아동을 경멸, 모독, 책임 전가하거나 위협하는 등의 적대적이고 거부적인 언어적 처우를 포함한다.

사용된 조사도구는 설문지로서 구체적인 문항은 고성혜(1992)가 “아동학대 개념규정 및 모자녀의 지각성향”에서 사용한 질문지(100문항)를 토대로 본 조사의 목적에 맞게 예비조사와 다른 실태조사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하여 수정하여 사용하였

으며 30명을 대상으로 한 사전검사의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57문항을 확정하였으며 신뢰도(Chronbach alpha)는 0.97이었다. (요인분석결과 부록 참조)

본 연구에서는 또한 아동학대와 방임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전문적 개입의 수용정도와 개입방향에 관한 인식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질문을 구성하였는데 여기에는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적 개입의 수용정도, 아동학대신고제도의 필요성과 신고의사,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사회적 개입의 다양한 내용에 대한 태도등이 포함되어 있다.

방임과 학대의 개념 규정에서는 아동학대의 유형과 개념들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방임이나 학대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 양육태도나 행동을 제시하고 그 발생빈도에 따라 학대(방임)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을 밝히도록 하여 각 유형별 학대(방임)개념을 측정하였다. 측정방법으로는 개별적인 행위에 대해 학대여부와 빈도발생에 따른 학대정도를 5점 척도의 응답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 문항에서 제시된 행위가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에는 '①학대가 아니다' '②학대인지 아닌지 불분명하다'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학대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③일주일에 2-3회 일어나는 경우 학대이다', '④한달에 1-3회 일어나는 경우 학대이다', '⑤일년에 1-3회 가량 일어나도 학대이다' 중에서 판단하게 하였다. 빈도를 학대개념구성의 한 기준으로 사용한 것은 폭력사용의 우발성과 반복성이 아동에 대한 학대판단의 중요한 지표가 될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인데 척도 구성에서의 빈도 구분이 정확한 등간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일주일, 한달, 일년이라는 서로 다른 시간 개념을 사용하였고 이를 통해 특정한 행위를 학대로 인식하는데 있어서의 응답자의 기준적용의 엄격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이다.

응답반응중 ①은 학대가 아니라는 판단이므로 0점, ②의 경우는 '모르겠다'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 학대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판단보류이므로 1점, ③ '일주일에 1-3회이상 자주 일어날 경우에만 학대로 볼 수 있다'는 2점, ④ '한달에 1-3회가량 가끔 일어날 경우에는 학대로 볼 수 있다'는 3점, ⑤ '1년에 1-3회가량 드물게 일어날 경우에도 학대로 볼 수 있다'는 4점으로 재부호화하여 평균을 구하였다.

<표 1>은 본 조사에서 사용된 질문지의 구성내용을 보여준다.

## 아동학대와 방임의 개념 및 사회적 개입에 대한 인식조사

<표 1> 문항구성

아동학대 및 방임의 개념구성		전문적 개입 및 제도내용에 대한 태도 (각 1문항씩)
학대유형	하위영역(문항수)	문항의 내용
방임(13)	안전소홀(2) 건강관리소홀(3) 학교생활무관심(2) 비행방조(2) 애정소홀(4)	아동학대신고센터 인지도 아동학대신고센터 이용경험 신고제도의 필요성 인식 신고의사 미신고이유 전문인의 신고의무에 대한 태도
신체적 학대(22)	이유없는 감정적 구타(4) 훈육의도의 경한 구타행동(6) 훈육의도의 중한 구타행동(4) 학대의 결과 輕한 상처(3) 학대의 결과 重한 상처(5)	자녀양육에 대한 국가개입의 수용정도 전문적 개입의 수용정도 전문적 개입의 내용 법적인 대응에 대한 태도 필요한 대책
정서적 학대(12)	감정에 치우친 일관성없는 태도(4)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동(4) 모욕감과 불안감 주는 행동(4)	자녀격리보호에 대한 태도 부모치료명령에 대한 태도 자녀학대시 구속에 대한 태도
언어적 학대(10)	거부적 언어(2) 적대적 언어(3) 원망적 언어(3) 경멸적 언어(2)	

### 3. 표본과 조사절차

본 조사의 조사대상은 일반인 집단과 전문인 집단으로 나뉘는데 일반인 집단은 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가 중심이 되었고 전문인집단은 의사(소아과의, 소아정신과의, 정신과의, 가정의학의, 응급의), 사회복지사(의료사회사업가,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전문요원) 및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의 3개 집단으로 하였다.

일반인 집단의 경우에는 도서지역을 제외한 전국을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으로 나누어 서울특별시, 경북 경주시와 경남 울산시, 전북 완주군과 전남 구례군을 무작위추출한 후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단순무작위로 한 학교씩 추출한 후 각 지역마다 중학교 1개교와 초등학교 1개교씩을 선정하였다. 서울은 인구집중도를 고려하여 크게 2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마다 중학교 1개교와 초등학교 1개교씩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역의 초등학교에서는 4학년 한반을 다른 지역의 초등학교에서는 6학년 한반을 무작위추출하고, 중학교에서는 2학년 한반씩을 무작위추출하여 최종적으로 추출된 12개학교의 12개학급의 구성원 전수의 부모와, 각 지역에 소재한 대학교를 1개씩 선정하여 사회복지학이나 아동복지, 아동학 전공자를 제외한 대학생을 지역당 40명씩 최종 표집하였다.

표본으로 선정된 학부모에게는 학교의 양해를 얻어 자녀에게 밀봉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보내 다음날 회수하였으며 대학생의 경우에는 강의시간을 이용 설문지를 배부한 후 다음날 회수하였다. 학부모의 경우 500매를 배부하여 385매, 대학생의 경우 80매 배부하여 50매가 회수되었으나 각각 55매와 8매가 누락된 응답항목이나 복수응답항목, 부적합한 응답자 등의 이유로 분석에서 제외되어 학부모 330매, 대학생 42매로 총 372매가 최종 분석에 들어갔다. 특히 군지역의 학부모 설문지는 회수율이 매우 저조하여 이후 분석에서 지역은 대도시와 중소도시로 양분하고 군지역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

전문가 집단의 경우에는 표집 지역의 종합병원이나 개인병원에서 근무하는 소아과, (소아)정신과, 가정의학과 및 응급실 의사;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정신)의료사회사업가, 사회복지관 근무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전문요원등 사회복지사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사를 선정하여 무작위로 각 집단 300명씩을 추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우송하였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교사를 제외한 의사와 의료사회사업가는 응답률이 너무 낮아 지역구분 없이 전국을 대상으로 확대조사하였다.

최종분석 대상이 된 의사집단은 80매, 사회복지사는 143매, 교사는 187매로 특히 의사집단은 20%가 채 안되는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조사는 1996년 7월부터 8월 두달간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분석에 사용된 전체 사례수는 782개였다.

#### IV. 결과분석

학대개념을 측정하는 도합 57개 문항의 평균범위는 전체집단의 경우 최고 3.45점, 최저 1.64점이며 이를 세부집단별로 보면 의사집단은 최고 3.88점에서 최저 1.78점, 사회복지사 집단은 최고 3.77점에서 최저 1.82점, 교사집단은 최고 3.52점에서 최저 1.78점이며 일반인 집단은 최고 3.21점, 최저 1.64점이다. 평균점수외에도 비학대('학대가 아니다'와 '학대인지 아닌지 불분명하다')에 해당하는 응답비율을 고려하여 평균 2.5미만, 비학대 응답비율 25%이상인 경우에는 내용타당도상 학대로 보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제외하였다.<sup>14)</sup>

14) 고성혜는 1~4점 척도에서 평균 2.82이하, 비학대 판정률 10%이상율, 채혜정은 1~6

## 아동학대와 방임의 개념 및 사회적 개입에 대한 인식조사

평균 3.0이상을 기록한 문항은 의사집단은 중 57개 문항중 41개, 사회복지사 집단은 35개, 교사 집단은 28개, 일반인 집단은 15개에서 3.0이상의 평균 점수를 보여주었고 평균이 3.5이상인 문항은 의사집단은 19개, 사회복지사 집단은 14개, 교사집단은 1개, 일반인 집단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에서 일반인과 전문가 집단 사이에 상당한 인식차가 있으며 전문가 집단내에서도 의사와 사회복지사는 인식의 공유정도가 높지만 교사집단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 아동학대와 방임의 개념규정에 관한 집단간 차이

아동학대와 방임 개념규정에 관한 일반인과 세 개 전문인 집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가를 검증하기 위해 학대유형별로 Manova test와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 1) 방임

방임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요인은 ‘안전소홀’, ‘건강관리소홀’, ‘학교생활 무관심’, ‘비행방조’, ‘애정소홀’의 다섯가지인데 일반적으로 말해 전문가 집단이 일반인 집단보다 방임에 대한 기준이 더 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전문가 집단내에서는 의사-사회복지사-교사의 순으로 의사가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개별문항 분석에서는 ‘안전소홀’ 하위요인의 경우 4개 집단 모두가 평균 2.0 미만에 35% 이상의 응답자가 방임이 아니라고 응답하여 방임개념에서 제외되었고 ‘학교생활 무관심’의 한 문항(평균 1.85-2.16)과 ‘애정소홀’의 한 문항(평균 2.20 - 2.39)도 방임이 아니라는 응답비율이 각각 전체응답자의 40.8%와 31.7%로 나타나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총 13개 문항중 방임으로 간주할 수 있는 8개 문항에서 4개 집단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인 집단간 차이는 단칸 테스트 결과, 의사와 일반인, 사회복지사와 일반인, 교사와 일반인 사이에서 발견되었다.

특히 모든 집단이 방임의 하위요인가운데 ‘비행방조’를 가장 심각하게 인지하

---

점 척도에서 평균 3.5이하, 비학대판정률 50%이상만을 학대개념에서 제외하고 있어 전자의 경우는 학대개념의 규정에서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판단보류’에도 1점을 부과하고 있어 평균이 다른 연구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할 때 학대개념을 도입하는데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전문가가 판단하는 학대의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할 때 일반 사회의 관행과 괴리를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괴리를 가능한 한 줄이면서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개념을 규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 있는 점이 눈에 띄는데 전문가집단내에서도 사회복지사 집단이 이를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교사·의사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두번째로 심각한 방임으로 인지된 '건강관리소홀'은 의사집단이 가장 심각한 방임으로 보고 있어 방임개념의 인지에 있어서도 각각의 전문성과 연관된 태도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방임의 지각정도에 대한 집단간 차이

하위요인과 문항	전체집단	의사	사회복지사	교사	일반인	F
<b>안전소홀</b>	1.81	1.89	1.84	1.87	1.74	4.65
밤늦도록 집밖에 내버려둠	1.86	1.78	1.82	1.96	1.84	
일몰시까지 혼자 집을 보게 함	1.75	2.80	1.87	1.78	1.64	
<b>건강관리소홀</b>	2.64	2.93	2.89	2.58	2.50	6.38***
명백히 아파도 내버려 둠	2.91	3.31	3.28	2.82	2.72	8.66***
더러운 이불이나 옷을 입힘	2.58	2.66	2.68	2.56	2.54	
제때에 식사를 주지 않음	2.41	2.83	2.72	2.34	2.24	8.01***
<b>학교생활무관심</b>	2.38	2.64	2.62	2.31	2.27	4.92**
이유없이결석해도 아무말안함	2.82	3.21	3.08	2.71	2.68	5.36**
숙제를 안해도 알지 못함	1.94	2.06	2.16	1.91	1.85	
<b>비행방조</b>	2.85	2.97	3.04	2.98	2.69	3.62*
나쁜 책, 비디오를 보아도	2.76	2.92	2.89	2.62	2.76	4.55**
아무말 안함						
몰래 돈이나 물건을 훔친 것을 모른체 함	3.18	3.16	3.06	2.76	2.95	5.17**
<b>애정소홀</b>	2.57	2.90	2.67	2.55	2.47	3.82**
도움을 청할 때 무시함	2.70	3.18	2.86	2.58	2.60	5.17**
약속을 잊거나 무관심함	2.26	2.39	2.24	2.20	2.27	
친척에게 여러날 말기고 외출하여 연락안함	2.79	3.18	2.99	2.75	2.64	4.43**
자녀의 고민, 슬픔, 기쁨을 거의 모름	2.54	2.85	2.61	2.68	2.38	3.86**
<b>방임 전체</b>	2.48	2.72	2.64	2.48	2.37	4.65**
<b>방임전체에 대한 Duncan test</b>		G1	G2	G3	G4+	
		-----	-----	-----	-----	

\* p<0.05, \*\* p<0.01, \*\*\* p<0.001

+ G1:의사집단 G2: 사회복지사집단 G3: 교사집단 G4: 일반인집단

2) 신체적 학대

신체적 학대는 아동학대 개념에서 가장 이견이 적고 객관적인 구성개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경우에도 이러한 경향이 그대로 나타나, 신체적 학대 변수는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는데 던칸 test 결과를 보면 의사와 사회복지사, 교사와 일반인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의사와 교사, 의사와 일반인, 사회복지사와 일반인, 교사와 사회복지사간에 지각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아동학대와 방임의 개념 및 사회적 개입에 대한 인식조사**

5개 하위요인 모두가  $p<0.01$ 수준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고 의사집단-사회복지사집단-교사집단-일반인집단의 순서로 빈도가 적어도 학대로 볼 수 있다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아동학대에 대한 기준의 엄격성이 의사집단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한 상처를 입힌 구타’,- ‘훈육목적의 중한 구타’ - ‘경한 상처를 입힌 구타’ - ‘이유없는 감정적 구타’ - ‘훈육목적의 경한 구타’의 순으로 기준의 엄격성이 약화되고 있어 구타행위 자체의 심각성이 신체적 학대의 일차적 판단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훈육의도를 가진 가벼운 구타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한 태도를 보여 기존의 연구결과<sup>15)</sup>와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표 3> 신체적 학대 지각정도의 집단간 차이**

하위요인과 문항	전체	의사	사회복지사	교사	일반인	F
<b>이유없는 감정적 구타</b>	3.11	3.52	3.44	3.17	2.86	15.83***
점점 더 흥분하면서 매질함	2.95	3.20	3.32	3.05	2.69	11.15***
매맞는 이유를 말하지 않고 때림	3.12	3.55	3.48	3.18	2.86	13.69***
화풀이로 때림	3.15	3.58	3.44	3.16	2.95	9.55***
술기운에 때림	3.21	3.74	3.53	3.27	2.93	14.35***
<b>훈육목적의 경한 구타</b>	2.73	2.99	2.99	2.66	2.61	5.93***
잘못할 때마다 반드시 때림	2.34	2.48	2.56	2.38	2.20	2.95**
잘못할 때 책등 물건을 던짐	2.88	3.34	3.04	2.90	2.71	6.29***
잘못할 때 빗자루, 회초리로 때림	1.98	2.38	2.09	1.83	1.95	
잘못할 때 주먹으로 위협함	2.34	2.55	2.54	2.10	2.35	3.43**
잘못할 때 뺨을 때림	2.68	2.89	2.94	2.59	2.57	3.33*
잘못할 때 꼬집음	2.42	2.56	2.63	2.30	2.36	
<b>훈육목적의 중한 구타</b>	3.04	3.28	3.36	2.99	2.89	8.99***
잘못할 때 주먹으로 치م	2.93	3.29	3.23	2.79	2.80	6.61***
잘못할 때 발로 참	3.14	3.35	3.50	3.08	3.00	6.79***
잘못할 때 머리를 벽에 부딪힘	3.34	3.69	3.72	3.37	3.11	13.31***
잘못할 때 팔을 비틀	3.26	3.50	3.59	3.23	3.09	7.48***
<b>경한 상처를 입힌 구타</b>	3.11	3.44	3.44	3.12	2.90	12.06***
맞은 부위가 붓거나 멍이 듦	2.97	3.36	3.30	2.95	2.77	9.09***
머리를 때려 두통을 호소함	3.06	3.31	3.38	3.11	2.86	7.65***
자녀를 때려 상처가 남	3.30	3.65	3.63	3.30	3.08	10.84***
<b>중한 상처를 입힌 구타</b>	3.38	3.80	3.72	3.41	3.15	15.54***
자녀를 때려 피가 남	3.26	3.70	3.62	3.28	3.02	13.64***
자녀를 때려 이빨이 흔들거림	3.37	3.76	3.74	3.37	3.13	13.68***
자녀를 때려 팔이 빠지거나 뺨	3.41	3.81	3.77	3.44	3.17	14.37***
자녀를 때려 기절함	3.45	3.88	3.75	3.52	3.21	14.40***
견지 못할 정도로 때림	3.43	3.84	3.72	3.46	3.21	11.51***
<b>신체적 학대 전체</b>	3.00	3.33	3.30	2.98	2.82	12.00***
<b>신체적 학대 전체에 대한 단칸</b>		G1	G2	G3	G4	

\*  $p<0.05$ , \*\*  $p<0.01$ , \*\*\*  $p<0.001$

15) 윤혜미, 앞의 글, 1995.

문항별 분석에 의하면 신체적 학대 문항 22개 가운데 1개문항을 제외한 21개 문항의 평균 점수는 2.20에서 3.88에 달하고 20개 문항에서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를 보면 아동학대 전체 문항 57개 중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1위- 5위가 신체적 학대문항이며 신체적 학대를 나타내는 22개 문항중 9개 문항은 4집단 모두 3.0을 상회하는 평균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 문항은 하위요인 '중한 상처를 입힌 구타'의 5개 전항목과 '경한 상처를 입힌 구타'의 1항목, 그리고 '훈육목적의 중한 구타' 4문항 중 3개 문항이다.

또 3개 전문가 집단 공히 '이유없는 감정적 구타'의 전 문항에 대해 3.0이상의 평균점수를 보여 일반인 집단에 비해 빈도가 적게 일어나도 학대로 볼 수 있다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아동학대 개념규정의 기준이 일반인보다 엄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는 문항은 '훈육목적의 경한 구타'중 '잘못할 때 꼬집는다'와 '잘못할 때 회초리나 빗자루로 때린다'로서 아동에게 심각한 상해를 초래하지 않는 경미한 학대문항에 대해 집단간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Gelles의 연구결과<sup>16)</sup>와 일치함을 볼 수 있다. 특히 '회초리나 빗자루로 때린다' 문항이 1.83에서 2.38에 이르는 비교적 낮은 평균점수를 보여주고 있으며 전체 응답자의 40.4%, 교사집단의 44.1%가 비학대로 보고 있다. 교사(1.83)가 일반인(1.95)보다 더 이를 학대로 지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아직도 아이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체벌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체벌과 학대와 구분의 모호하여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3) 정서적 학대

많은 기존의 연구들이 언어적 학대를 정서적 학대의 한 영역으로 포함시키고 있는데<sup>17)</sup> 이는 언어적 학대가 결국에는 아동의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거칠고 모욕적인 언어는 언어만으로도 아동을 위축시키는 하나의 폭력이 될 수 있고 언어폭력이 점점 심화되면서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여기서는 정서적 학대를 비언어적 정서학대와 언어적 정서학대로 분리시켜 보았다.

#### (1) 비언어적 정서학대

정서적 학대의 개념은  $p < 0.001$ 준에서 전체와 하위요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정서적 학대 유형의 지각정도는 의사와 교사, 의사와 일반인, 그리고 사회복지사와 일반인 집단 사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16) Gelles, *op. cit.*, 1982

17) 고성혜, 앞의 논문, 1991.

## 아동학대와 방임의 개념 및 사회적 개입에 대한 인식조사

로 던칸 테스트에서 드러났다. 역시 의사집단과 사회복지사 집단의 지각정도가 가장 높은 것이다.

<표 4-1> 비언어적 정서 학대 개념 지각정도의 집단간 차이

하위요인 문항	전체집단	의사	사회복지사	교사	일반인	F
감정에 치우친 일관성 없는 태도	2.66	2.94	2.83	2.65	2.53	6.11***
이유도 없이 욕설을 들음	3.14	3.51	3.34	3.15	2.97	
기분에 따라 태도가 다름	2.68	3.01	3.01	2.66	2.48	6.54***
화가 나 자녀말에 대꾸도 않음	2.21	2.44	2.22	2.18	2.17	
잘못 있는데 짜증, 화풀이함	2.61	2.80	2.76	2.62	2.50	8.35***
아동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동	3.19	3.50	3.39	3.22	3.03	7.55***
부모가 없어졌으면할 만큼 대함	3.25	3.65	3.45	3.29	3.07	7.55***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대함	3.05	3.33	3.24	3.07	2.90	4.38**
죽고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대함	3.32	3.69	3.58	3.30	3.16	7.77***
집나가고 싶은 마음 들도록 대함	3.13	3.33	3.30	3.22	2.98	4.18**
모욕감과 불안감 주는 행동	3.25	3.61	3.52	3.28	3.06	11.59***
잘못할 때 감감한 곳에 가두어 둠	3.34	3.59	3.52	3.36	3.20	4.45**
잘못할 때 옷을 벗기고 벌세움	3.39	3.74	3.69	3.47	3.15	11.96***
잘못할 때 집밖으로 내쫓음	3.14	3.53	3.36	3.11	2.97	6.86***
잘못할 때 자녀에게 소중한 것을 부수어버림	2.90	3.58	3.50	3.19	2.90	12.18***
정서적 학대 전체	3.03	3.35	3.25	3.05	2.87	9.63***
정서적 학대 전체에 대한 Duncan test 결과		G1	G2	G3	G4	

\* p<0.05, \*\* p<0.01, \*\*\* p<0.001

하위요인별로 보면 네집단 모두 '모욕감과 불안감을 주는 구체적 행동' -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동' - '감정에 치우친 일관성 없는 태도'의 순으로 학대의 심각성을 지각하고 있다.

개별 문항 분석에 들어가면 하위요인 '감정에 치우친 일관성 없는 태도' 중 집단별로 2.17에서 2.44에 이르는 평균점수를 보여주는 '화가 나서 자녀 말에 대꾸도 않는다' 문항에 대해서는 학대가 아니거나 불분명하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32.4%에 달하고 있고 특히 일반인은 의사의 21.3%에 비해 36.4%라는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여줌으로써 이 문항은 학대라는 사회적 공감을 얻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잘못한 일이 없는 자녀에게 짜증내고 화풀이한다'의 경우에도 전체의 22.9%에 이르는 응답자가 비학대로 보고 있다.

### (2) 언어적 학대

언어적 정서학대 유형도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고 의사와 교사, 의사와 일반인, 그리고 사회복지사와 일반인 집단 사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던칸 테스트에서 드러났다.

<표 4-2> 언어적 학대 개념 지각정도의 집단간 차이

하위요인과 문항	전체집단	의사	사회복지사	교사	일반인	F
<b>거부적 언어</b>	1.88	2.13	1.96	1.86	1.79	4.52**
괜히 낳았다	2.78	3.13	2.97	2.75	2.64	3.94**
나를 부모라고 부르지 마라	2.85	3.27	2.92	2.84	2.74	3.73*
<b>원망적 언어</b>	2.82	3.13	2.87	2.77	2.75	2.54
너만 없으면 속이 편할 것 같다	2.89	3.28	3.00	2.81	2.80	3.67*
너 때문에 다른 사람 보기 창피하다	2.81	3.10	2.84	2.73	2.77	
너는 우리집의 꼴치 덩어리이다	2.76	3.03	2.78	2.78	2.68	
<b>적대적 언어</b>	3.19	3.55	3.41	3.27	2.98	9.53***
나가 죽어라	3.23	3.65	3.38	3.32	3.03	8.08***
너 때문에 내가 도망가 버려야겠다	2.94	3.26	3.16	3.01	2.76	5.81***
너를 죽여버릴거야	3.39	3.73	3.68	3.47	3.15	11.55***
<b>경멸적 언어</b>	2.89	3.28	3.03	2.97	2.71	7.35***
멍청한 것, 미친 것, 원수	3.12	3.61	3.27	3.26	2.89	11.14***
꼴 좋다, 잘 논다, 겨우 그거나	2.65	2.94	2.78	2.67	2.52	2.97*
<b>언어적 학대 전체</b>	2.94	3.30	3.08	2.96	2.80	6.02***
<b>언어적 학대 전체에 대한 Duncan test 결과</b>		G1	G2	G3	G4	

\* p<0.05, \*\* p<0.01, \*\*\* p<0.001

하위요인별로 보면 ‘적대적 언어’가 가장 심각한 언어적 학대의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다음이 ‘경멸적 언어’, ‘거부적 언어’, ‘원망적 언어’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말해 적대적 언어와 거부적 언어는 아동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형태인데 반해 거부적, 원망적 언어는 아동으로 인한 부모의 갈등을 비추어 간접적으로 공격하는 형태이다. 원망적 언어는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보아 언어적 학대 전체의 평균이 2.94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문가 집단의 경우 3.0을 넘게 나타난 것은 응답자들이 언어폭력이 아동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폐해의 심각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언어적 학대도 학대개념속에 수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 2. 학대유형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영향

여기서는 아동학대를 방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언어적 학대의 4개 유형으로 보았을 때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이 각 유형별 학대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독립변수로서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는 연령, 성별, 소득수준, 교육수준, 직업, 지역, 자녀수를 사용하였으며 응답자는

## 아동학대와 방임의 개념 및 사회적 개입에 대한 인식조사

일반인 집단과 전문인 집단으로 크게 두집단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반인 집단의 경우 소득수준, 교육수준, 지역과 자녀수가 유의미한 인구사회학적 변수로 나타났고 전문인 집단의 경우에는 연령이 중요한 변수였으며 직업은 이미 1절에서 유의미한 변수로 분석되었으므로 기록을 하지 않았다. 각 학대유형에 대한 하위변인별 분석도 하였으나 지면의 한계상 생략한다.

<표 5> 일반인 집단의 방임 및 학대개념 지각정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

학대유형	chi-square 값			
	소득수준	교육수준	자녀수	지역
방임	8.42***	9.39***	3.41*	20.40***
신체적 학대	4.66**	7.90**	3.76*	21.37***
비언어 정서 학대	3.44**	8.69***	4.25*	17.38***
언어적 정서 학대	2.75*	11.20***	7.33***	19.11***

\* p<0.05, \*\* p<0.01, \*\*\* p<0.001

소득수준은 월수입을 기준으로 100만원 미만(36),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151),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97), 300만원 이상(39)의 4개로 범주화하였다. Duncan test 결과 방임을 제외한 나머지 세가지 학대유형에 대한 지각정도가 월소득이 가장 낮은 100만원 미만의 집단을 제외하고는 거의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가지 학대유형 모두의 지각정도가 소득수준별로 상이한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적인 성향은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들이 학대 지각정도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의 교육수준과 실제 아동학대행위의 연관을 다룬 연구는 적지만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아동학대가 빈발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결론인데<sup>18)</sup> 본 연구에 응답한 일반인 집단의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교육수준을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으로 삼분하여 분석한 결과 네가지 아동학대유형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간 차이를 구할 수 있었고 다중 집단간 차이를 보기 위한 던칸 테스트의 결과 각 유형에서 교육수준이 다른 세 집단이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학대 지각정도의 평균값을 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의 빈도가 적더라도 아동학대로 보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동학대 원인과 관련된 연구들은 환경적 변수로서 가족상황, 즉 자녀의 수가 유의미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 연구들은 형제자매의 수가 많을수록 학대가 빈발한다고 결론짓고 있다<sup>19)</sup>. 본 연구에서도 자녀의 수가 아동학대 개념인식에 영향

18) 주영희, 앞의 글, 1984; Zigler, E., "Controlling child abuse" in G. gerber, C. J. Ross and Zigler(eds.), *Child Abus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0.

19) Gil, G. "Violence against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3, 1971, pp. 637-647; Light, R. J., "Abused and neglected children", *Harvard Educational*

을 주는 변수인지를 알아보았다. 자녀의 수를 외동아이, 두자녀, 세자녀이상의 경우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자녀수는 방임과 세가지 학대유형 모두의 인지정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던칸 테스트 결과 언어적 정서학대를 제외하고는 자녀수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다. 언어적 정서학대의 경우에는 자녀수가 하나거나 둘인 집단이 셋 이상인 집단보다 학대의 폐해에 대한 지각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6> 연령별로 본 전문가 집단의 유형별 학대 개념 지각정도

유형별 학대	F값	Duncan test				
		G2	G1	G3	G4	G5
신체적 학대	4.28**					
정서적 학대	2.49*					
언어적 학대	4.42**					

+G1:20대(135) G2:30대(160) G3:40대(82) G4:50대(23) G5:60대(4)

\* p<0.05, \*\* p<0.01, \*\*\* p<0.001

아동학대 개념이 그 사회의 문화적 특성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면, 한 사회내에서도 지역적 특징에 따라 아동양육방식에 대한 문화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지역을 대도시(219)와 이를 제외한 중소도시(130)로 나누어 아동학대의 개념을 인지하는데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지역은 방임과 학대 유형 세가지 모두의 경우에 p<0.001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는데 일반적으로 대도시 거주자가 중소도시 거주자에 비해 방임이나 학대에 대해 보다 민감하고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지역에 따라 어떤 행위가 아동학대인지를 지각하는데에는 상당한 견해차가 있음을 보여준다.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정책이나 제도의 도입시, 개념확립을 위한 의견수렴이 전국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전문가 집단(의사, 사회복지사, 교사)의 경우에는 일반인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왔던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응답자의 연령이 방임을 제외한 세가지 아동학대유형에서 개념지각정도에 영향을 주는 유일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세가지 직종의 전문가집단을 합하여 한 집단(n=409)으로 보았는데 표를 보면 30대 연령층이 학대개념에 대한 지각정도가 가장 높고 다음이 20대인데 이는 아마 30대 연령계층이 일반적으로 결혼하여 저연령의 자녀를 두고 있는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40대 이후의 연령층에서는 연령층이 높을수록 학대개념에

Review, 43, 1973, pp. 556-598; Zigler, E., op. cit., 1980.

**아동학대와 방임의 개념 및 사회적 개입에 대한 인식조사**

대한 인지도가 낮아지는 특성을 볼 수 있다. 이는 고연령층일수록 비교적 전통적인 엄한 훈육방식에 노출되어왔고 젊은 층일수록 보다 민주적인 훈육방식을 접할 기회가 많았으며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자신의 현실이 의식에 반영되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3. 아동학대와 방임 방지를 위한 개입필요성과 개입방향에 대한 태도**

**1) 사회적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집단간 차이**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방지제도의 도입은 신고제를 포함하여 부모가 자기 자녀를 뜻대로 양육할 수 있는 권리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가가 제한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제2장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경향이 강한 우리 문화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국가가 개입하여 부모에게 치료명령을 내리거나 극한 상황의 경우 부모의 양육권을 부인하는 것이 어떻게 수용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조사에서는 국가가 부모의 권리를 어느정도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려 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7>에서 볼 수 있다.

**<표 7> 국가개입에 대한 집단간 의식차이**

응답예	빈도(%)				
	전체	의사	사회복지사	교사	일반인
부모의 권리는 제한될 수 없다	30( 4.0)	0( 0)	1( 0.7)	8( 4.4)	21( 5.9)
극한 상황에서만 제한될 수 있다	166(21.9)	19(24.7)	21(14.9)	49(26.6)	77(21.6)
필요하다면 어느정도 제한될 수 있다	489(64.5)	47(61.0)	101(71.6)	116(63.0)	225(63.2)
아동보호를 위해서 언제라도 제한가능하다	73( 9.6)	11(14.3)	18(12.8)	11(6.0)	33(19.3)
합계	758	77	141	184	356

$\chi^2 = 22.77 \text{ (} p < 0.01 \text{)}$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라는 시각에서 볼 때 위의 두가지 입장을 부모의 양육권에 가치를 두는 자유방임적 입장이라 한다면 아래 두가지 입장은 부모의 양육권보다 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우선하는 국가부권주의적 입장<sup>20)</sup>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반적인 경향을 보면 약 74%의 응답자가 부모의 양육권은 아동보호를 위해서라면 어느정도(64.5%), 또는 언제라도(9.6%) 제한될 수 있다고 대답하여 사회적 개입에 수용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일반인과 전문인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수

20) Harding, L., *op. cit.* 1991.

용적 태도가 사회복지사 -의사- 일반인 - 교사의 순서로 나타나, 학대개념의 지각 정도에서 나타난 의사 - 사회복지사 - 교사 - 일반인의 순서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복지사 집단이 아동의 사회적 보호라는 주제와 가장 익숙하고 또 다른 집단보다 업무수행과정에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가장 많이 접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인보다도 교사 집단이 아동의 사회적 보호에 대한 태도가 더 보수적인 점은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앞으로의 조사에서도 일관성이 있는 결과가 나오는지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표 8>은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사회적 개입의 필요성과 참여의사 등을 신고제도를 중심으로 교차분석한 것이다.

< 표 8 > 아동학대 신고제도에 대한 집단간 태도 차이

							(%)
문항	응답범주	전체 (777)	의사 (80)	복지사 (143)	교사 (186)	일반인 (368)	X <sup>2</sup>
아동학대신고 센터인지여부	안다	42.2	47.5	66.9	28.5	38.4	52.91***
	모른다	57.8	52.5	33.1	71.5	61.6	
아동학대신고 센터이용경험	있다	5.2	2.5	10.1	3.9	2.9	7.15
	없다	94.8	97.5	89.9	96.1	97.1	
아동학대신고 제도 필요성	필요하다	94.3	98.8	100	94.6	91.0	18.49***
	필요치 않다	5.1	1.2	0	5.4	9.0	
전문인 신고 의무제에 대한 의견	신고의무 있다	83.3	91.3	93.7	86.3	75.8	36.43***
	신고의무 없다	2.6	1.3	0.7	2.7	3.7	
	모르겠다	13.9	7.4	2.9	10.9	20.5	
학대 목격시 신고의사	신고한다	78.2	79.2	87.3	74.5	76.3	9.23*
	신고않겠다	21.8	20.8	12.7	25.5	23.7	
비신고이유 (n=161)	신고할일이 없다	27.3	6.3	5.0	26.1	38.0	31.91***
	남의 가정사	32.3	50.0	35.0	32.6	27.9	
	효과의심	12.0	18.8	20.0	15.2	19.0	
	번거롭고 귀찮아 질까 봐	12.4	25.0	5.0	17.4	8.9	
	기타	9.9	0.0	35.0	8.7	6.3	

\* p<0.05, \*\* p<0.01, \*\*\* p<0.001

현존하는 아동학대신고센터의 이용경험을 제외하고는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선 아동학대 신고센터가 현재 있는지를 아는지라는 질문(21)에 대해서는 전체의 42%가 알고 있다고 대답하여 예상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실제 이용경험은 사회복지사 집단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신고제도

21) 우리나라에서는 1979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어린이 학대신고센터를 개설하였으나 인식부족으로 폐지되었고, 1985년 7월 서울 시립아동상담소가 상담소내에 "아동 권익보호신고소"를 설치하였고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에서도 1989년 3월부터 전국 15개소에 지회를 설치하여 신고를 받고 있지만 현행신고제도에 대한 인식과 이용율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아동학대와 방임의 개념 및 사회적 개입에 대한 인식조사

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집단의 90%이상이 필요하다고 대답하였으며 교사, 사회복지사, 의사등 전문가들에게 신고의무를 지우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의 83%가 찬성, 14%가 판단을 유보하였으며 2.6%만이 반대하였다. 집단별로는 사회복지사 집단의 94%, 의사집단의 91%가 찬성한데 비해 교사집단은 86%, 그리고 일반인은 76%만이 찬성하여 차이가 있었다. 가정폭력방지법 시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전문인 신고의무제에 대한 공방이 뜨거웠고, 의사와 교사집단이 크게 반대했던 것을 고려하면 이 조사의 응답자들은 상당히 진보적이라 할 수 있으나 여전히 예방과 발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교사집단의 찬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고(학대사실의 신고의사도 집단중 가장 낮았음), 특히 이해집단이 아닌 일반인 집단의 찬성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점은 신고제도의 도입시 많은 홍보작업이 필요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방임이나 학대를 목격할 경우 신고의사에 대한 질문에는 78%정도가 하겠다고 대답하였는데 하지 않겠다고 대답을 한 22%의 비신고이유는 집단별로 그 순위가 각각 달랐다. 전문가 집단은 신고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로 '남의 가정사'를 들었고 일반인 집단은 '신고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를 첫 번째 이유로 들고 있다. 즉 전문가집단은 심각성은 인정하지만 남의 집안일이라는 의식 때문에 신고하지 않는 것이고 일반인은 아동에 대한 부모의 폭력사용 자체를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태도는 학대개념에서 보인 높은 지식수준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태도여서 의식과 행동의 일관성을 추구하기 위한 교육, 홍보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2) 사회적 개입의 방향에 대한 집단간 태도의 차이

만약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개입이 제도화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관한 의견을 알아보았다. 문화적 배경과 아동양육에 대한 가치의 상이성은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접근법을 요구할 것이며 또한 전문직 종의 가치도 역시 접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되어 가해자와 아동에 대한 접근법을 두고 태도를 비교하였다.

아동학대 발생시 공식적인 개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67%가 긍정하고 있으며 개입의 내용이 아동에 대한 치료를 중심으로 할 것인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동치료 중심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68%,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민사 형사상 처벌에 관해서는 반반의 의견을 보이고 있으나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간에 상당한 의견의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의사와 사회복지사는 아동에 대한 치료와 함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형사문제로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데 반해 교사와 일반인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개입의 방향에 대해서도 사회복지사가 가

장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교사집단이 가장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러한 집단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우선순위에서는 의사를 제외한 모든 집단이 부모에 대한 치료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어 아동학대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인식과 아동학대행위가 치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9> 사회적 개입의 방향에 대한 집단간 태도의 차이

문항	응답범주	전체 (777)	의사 (80)	복지사 (143)	교사 (186)	일반인 (386)	X <sup>2</sup>
아동학대개입 방법	가정내 자체	32.6	37.2	16.6	54.5	26.9	61.06***
	외부개입	67.4	62.8	83.4	45.5	73.1	
치료와 처벌에 대한 태도	아동치료중심	68.1	49.4	55.8	80.6	71.1	36.08***
	가해자처벌	31.9	50.6	44.2	19.4	28.9	
법적 대응에 대한 태도	민사만	48.2	32.1	30.9	59.1	53.2	36.28***
	민사, 형사상	51.8	67.9	69.1	40.9	46.8	
격리보호에 대한 태도	찬성	82.5	88.8	96.5	76.8	78.4	30.59***
	모르겠다	11.5	6.3	2.8	14.6	14.6	
	반대	6.0	5.0	0.7	8.7	7.0	
치료명령에 대한 태도	찬성	84.9	91.1	97.2	85.3	78.5	35.25***
	모르겠다	10.6	7.6	2.1	8.2	16.1	
	반대	4.5	1.3	0.7	6.5	5.6	
경찰구속에 대한 태도	찬성	17.6	19.2	28.9	14.8	14.1	24.80***
	모르겠다	28.0	23.1	23.2	22.9	33.6	
	반대	54.4	57.7	47.9	62.3	52.3	
프로그램 우선순위	법 제정	12.0	17.5	16.7	8.8	10.6	38.93**
	아동보호기관	29.0	25.0	21.7	33.5	30.4	
	부모치료기관	38.6	23.8	31.9	43.4	42.1	
	인식혁신	18.7	30.0	27.5	17.9	37.9	
	기타	1.7	3.8	2.2	13.7	1.7	

\* p<0.05, \*\* p<0.01, \*\*\* p<0.001

#### 4. 개입 필요성과 개입방향에 영향을 주는 인구사회학적 변수

여기서는 어떤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이 응답자의 아동학대에 대한 개입과 접근 방향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조사하기 위해 응답자를 일반인과 전문가 집단으로 이분하여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지역, 직업을 대입하여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일반인 집단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은 성별,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의 세가지로 나타났다. 성별(X<sup>2</sup>=7.6\*\*)은 신고제도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성(99%)이 여성(89%)에 비해 신고제도의 필요

## 아동학대와 방임의 개념 및 사회적 개입에 대한 인식조사

성을 더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소득수준은 전문인의 신고의무제에 대한 태도( $X^2=14.0^*$ )에 영향을 미치는데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의 신고의무제에 대한 찬성도가 낮은 계층보다 좀 높았으나 그 차이는 미미하였다. 교육수준은 신고제의 필요성( $X^2=9.6^{**}$ ), 신고의사( $X^2=7.1^*$ ), 아동의 격리보호에 대한 태도( $X^2=10.5^*$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대졸자의 97%, 고졸자의 91%, 중졸 이하의 81%가 신고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교육수준과 신고제의 필요성 인식도가 정비례하고 있고, 아동학대사실을 신고할 의사가 있는가와 아동의 격리보호에 대해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다음 전문가 집단의 경우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성별, 연령과 소득수준이 있었는데 우선 성별은 부모의 아동양육과 사회적 개입에 대한 태도( $X^2=7.91^*$ ), 개입방식( $X^2=12.74^{**}$ ), 학대부모의 구속( $X^2=9.65^{**}$ ), 전문인 집단의 신고의무제에 대한 태도( $X^2=10.15^{***}$ ) 문항과 관련이 있었다. 여자들의 80%가 사회적 개입에 찬성하는데 비해 남자는 68%의 찬성률을 보였고 개입방법에 대해서도 여자들의 69%가 외부개입이 필요하다고 한데 비해 남자는 51%만이 외부개입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학대부모를 구속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성의 24%, 남성은 15%가 찬성하였고 전문가집단의 신고의무에 대해서 여자의 93%, 남자의 84%가 찬성하여 전체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아동학대에 대한 개입에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집단에서 연령은 거의 모든 문항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관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20대와 30대의 비교적 젊은 연령층의 태도가 보다 개방적이고 적극적이다.

젊은 계층은 사회적 개입에 대해서도 수용적이며 신고제도의 필요성 인식도나 신고의사도 높고, 아동학대 개입방법에 대해서는 외부개입을 주장하고, 개입의 내용에서는 처벌을 병행하는데 대한 찬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집단의 소득수준은 아동학대신고센터 인지여부( $X^2=11.4^{**}$ ), 아동학대에 대한 개입방법( $X^2=10.6^*$ ), 개입의 내용( $X^2=10.6^*$ )이라는 문항에 대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는 변수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월 200만원 이상인 두 집단( $n=164$ )에서는 신고센터 인지여부가 반반으로 나타났으나 월 100-200만원 미만의 경우( $n=177$ )에는 38%만이 알고 있었고 반대로 100만원 미만의 경우( $n=53$ )에는 64%가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다른 집단과 비교할 때 소득이 비교적 낮은 사회복지사가 '100만원 이하'의 집단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 인지도가 높고, '월 100-200만원' 집단에는 교사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인지도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나머지 두 문항에 대해서도 유사하여 개입방법에서는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의 78%와 가장 높은 집단의 68%가 외부개입을 찬성하였고 중간수준의 두 집단은 56%선에 머무르고 있음을 보여주며 개입의 내용에 대해서도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의 40%와 가장 높은 집단의 47%가 아동의 치료와 병행하는 가해자의 처벌을 주장한데 반해 나머지 중간수준의 두 집단은 27%와 29%만이 이에 찬성하였다. 즉, 소득수준이 높은 의사와 소득수준이 비교적 낮은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포함된 집단의 성향이 유사하고 중간집단과는 차이가 뚜렷한 것이다.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의 이러한 영향은 앞으로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제도를 수립하고 프로그램을 만들때 전국민적인 수용을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표 10> 연령에 따른 전문가 집단의 태도의 차이

문항	X <sup>2</sup>
부모의 아동양육권과 사회적 개입에 대한 태도	27.92***
아동학대신고센터 인지여부	13.99***
아동학대신고센터 이용경험	27.86***
아동학대신고제도 필요성에 대한 태도	18.12***
아동학대사례 목격시 신고의사	12.40*
아동학대 개입방법	27.32**
개입의 내용(치료중심, 처벌병행)	10.77*
전문가 집단의 신고의무제에 대한 태도	149.86***

\* p<0.05, \*\* p<0.01, \*\*\* p<0.001

## V. 결론 및 논의

아동학대에 관한 논의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는 우리사회의 문화적 배경에 맞게 아동학대 및 방임을 정의하는 일일 것이다. 부모의 자녀양육권과 아동보호를 위한 국가개입이 서로 갈등하지 않고 상호보완하면서 아동에 대한 최선의 사회적 보호 방안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반인은 특정한 자녀양육행동이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는 면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전문가 집단은 일반인보다 지나치게 엄격하여 현실과 거리가 있는 학대개념을 고수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각에서 아동학대와 방임의 개념과 개입의 필요성 및 개입의 방향에 대한 전문가와 일반인의 인식을 조사비교하

## 아동학대와 방임의 개념 및 사회적 개입에 대한 인식조사

여 아동학대 개념규정의 기준을 마련하고 치료와 예방을 위한 개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작업에서 밝혀진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아동학대의 하위유형으로 신체적 학대(m=3.0), 비언어적 정서학대(m=3.0)와 언어적 정서학대(m=2.9)는 일반인과 전문인 집단 모두에게서 학대로 규정되었다. 물론 일반인 집단과 전문인 집단간에는 개념규정상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세가지 학대유형 모두에서 전문가 집단이 일반인 집단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의사와 사회복지사가 교사와 일반인에 비해 학대에 대해 더 민감하게 지각하고 있었다. 이는 이들이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아동학대의 부정적 결과를 잘 인식하고 있어 발생빈도가 낮아도 학대로 진전될 가능성을 경계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전반적으로 전문가 집단중 교사는 다른 전문가 집단보다 오히려 일반인쪽에 더 가까운 지각형태를 보여주었다. 이는 교사집단이 의사나 사회복지사에 비해 '아동학대' 문제에 직접적으로 접촉할 기회가 덜하고 전문성 역시 덜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제도교육현장에서 현재 훈육목적의 체벌이 인정되고 있는 사실이 교사로 하여금 유사한 행위를 학대로 규정하기 어렵게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조사에서 각 집단이 유형별 학대에 대해 규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신체적 학대의 경우에는 아동에게 미친 결과를 우선적인 평가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학대자의 의도가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응답자가 신체적 학대의 심각도를 '중한 상처를 입힌 구타(m=3.38)' --> '경한 상처를 입힌 구타(m=3.11)', '이유없는 감정적 구타(m=3.11)' --> '훈육목적의 중한 구타(m=3.04)' --> '훈육목적의 경한 구타(m=2.73)'의 순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훈육목적의 중한 구타'에 묘사된 행위가 '중한 상처를 입힌 구타'에 묘사된 행위와 거의 동일한 점을 감안하면 행동자체보다 아동이 입은 상해를 중심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동에 대한 폭력적 행위자체보다 그 결과가 학대의 판단기준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상처를 입히지만 않으면 구타하는 것은 용인될 수도 있다는 이중적 태도로 해석할 수 있어 우리사회의 폭력에 대한 이중적 태도와도 일맥상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아동에게는 상당히 위협적인 태도라 할 것이다. 부모에게 구타당하는 아동의 5%정도만이 의료적 도움을 필요로 할 정도로 다치기 때문에 아동학대의 개념을 아동이 입은 상처에 초점을 맞춘다면 95%의 아동에 대한 폭력사용을 용인하는 셈이 되므로 행동의 결과보다는 행동자체를 강조해서 개입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Straus의 주장을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sup>22)</sup>

또 '이유없는 감정적 구타'가 '훈육목적의 중한 구타'보다 심한 학대행위로 인

22) Straus, M., "Physical Violence in families and the welfare of children," 『가정폭력과 아동복지』, 아동복지학회자료집, 1997, 3.

식된 점은 학대의 판단에 학대자의 의도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어 훈육이라는 의도가 중한 구타라는 행위의 심각도를 많이 희석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훈육 목적의 경한 구타'는 가장 덜 심각한 학대행위로 인식되었는데 특히 '잘못할 때 빗자루나 회초리로 때린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내집단 공히 학대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러한 행위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체벌과 학대의 경계구분이 학대개념규정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체벌이 아동에게 상처를 입힐 의도는 없으나 아동의 행동을 수정,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는 의도적 행위라는 점에서는 폭력과 다를 바 없고 또 체벌이 당장에는 아동의 문제행동을 멈추게 할지 몰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문제행동을 증가시킬 경향이 있다는 Straus의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서적 학대(비언어적)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행동보다 아동이 입게되는 학대의 결과를 중심으로 학대개념이 규정되었고 학대의 동기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모욕감, 불안감을 주는 행동(m=3.25)'-->'아동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동(m=3.19)'-->감정에 치우친 일관성 없는 태도(m=2.66)의 순으로 학대의 심각성이 지각되었고 집단별로 보았을 때에도 이 순서는 동일하다. 흥미로운 것은 정서적 학대 전체의 평균점수(m=3.0)가 신체적 학대 전체의 평균점수(m=3.0)와 동일하다는 점으로 정서적 학대의 피해에 대해서도 그만큼 인지도가 높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

정서적 학대중 언어적 학대의 경우는 구타가 동반되지 않더라도 아동에게 심리적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예상되는 적대적(m=3.19) 경멸적(m=2.89) 원망적 언어(m=2.82)도 학대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거부적 언어는 평균이 1.88로 학대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셋째, 본 조사에서는 다른 학대유형에 비해 지각정도가 낮기는 하지만 방임도 바람직하지 못한 양육행동에 포함되었다. 하위요인 다섯가지 가운데 '비행방조(m=2.85)'-->'건강관리소홀(m=2.64)'-->'애정소홀(m=2.57)'의 세가지가 기준을 넘었으며 '안전소홀'은 전체와 집단별 모두에게서 방임으로 개념화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고, '학교생활 무관심'은 의사와 사회복지사에게서는 방임으로, 교사와 일반인에게서는 방임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안전소홀'이 방임으로 지각되지 않은 것은 묘사된 문항의 내용이 아동에게 상해를 직접적으로 초래할만한 내용이 아니고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적극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아동에게 해를 미치는 것을 바람직하지 못한 양육유형으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신고된 아동학대 유형가운데 전체의 55%가 방임이라는 미국의 경우를 상기해보면 방임이 결코 가볍게 다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정리해보면 일관되게 비학대로 나타나는 문항들은 방임에서 '안전소홀'의 '밤늦

## 아동학대와 방임의 개념 및 사회적 개입에 대한 인식조사

도록 집밖에서 내버려 둔다'와 '어두워질 때까지 외출하여 혼자 집을 보게 함'의 두 문항과, '학교생활무관심'의 '숙제를 해가는지 안해가는지 알지 못한다'와 신체적 학대의 '훈육목적의 경한 구타'중 '잘못할 때 빗자루나 회초리등으로 때린다', 비언어적 정서학대의 '감정에 치우친 일관성 없는 태도'중 '화가 나 자녀 말에 대꾸도 안한다', 그리고 언어적 정서학대의 '거부적 언어'에 속하는 '너를 괜히 낳았다'의 여섯 개이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 사용한 57개의 아동학대 개념규정 문항은 상기한 6개를 제외한 51개의 경우 모두 학대개념으로 별 무리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아동학대의 개념측면에서 집단간 지각성향에 영향을 미친 인구사회학적 인 특성을 알 수 있었다. 일반인일 경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자녀수가 1-2명일 때,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을 때 학대정도를 더 높이 지각하는 성향이 있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소득수준, 교육정도, 자녀의 수등 아동학대의 원인으로 설명되는 사회적 스트레스 요인이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해 준다. 지역간 차이의 유의미성은 자녀양육에 대한 도농간 문화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며 정책이나 프로그램 마련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러준다 하겠다. 전문인의 경우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학대정도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는 성향을 보였다.

다섯째,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개입을 승인하는 태도가 74%에 달해 관념적으로는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제도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아동학대신고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의 94%가 찬성했으나 본인의 신고의사와 관련해서는 78%만이 긍정적으로 답해 관념과 행동사이에는 아직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의 신고의무제에 대해서는 83%가 찬성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집단별 성향을 보았을 때 아동학대 개념의 지각정도의 경우와는 달리 수용률이나 찬성률이 사회복지사 -->의사-->일반인-->교사의 순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아마 사회복지사가 아동학대문제에 대한 경험이 많고 실천적 개입의 당사자로서 아동복지에 대한 강한 신념과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교사가 보여주는 강한 보수적 경향은 아동학대방지제도를 만들때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특징이라고 생각된다.

여섯째, 사회적 개입의 방향에 대해서는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가정내에서보다는 외부에서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67%로 우세하였으며 아동에 대한 치료를 중심으로 할 것인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간에 상당한 의견의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의사와 사회복지사는 아동에 대한 치료와 함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 반면인테 반해 교사와 일반인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개입의 방향에 대해서도 사회복지사가 가장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

으며 교사집단이 가장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러한 집단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우선순위에서는 의사를 제외한 모든 집단이 부모에 대한 치료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어 아동학대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인식과 아동학대행위가 치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교사를 제외한 나머지 세집단은 두 번째 우선순위로 아동에 대한 구타와 체벌을 훈육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이나 관행의 개선이라고 하여 이 문제가 단순한 제도나 프로그램의 실시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있다.

일곱째, 개입에 대한 집단별 태도에 영향을 주는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을 밝혀내었다. 일반인의 경우 성별,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유의하였고 전문가 집단의 경우에는 성별, 연령과 소득수준이 유의하였다.

결론적으로 어떤 행위가 아동학대로 규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체나 결과는 물론 동기와 행위의 정당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본 조사에서는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방임과 정서적 학대가 비교적 적극적으로 학대로 수용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적극적인 사회적 개입에 대한 수용자세도 어느정도 공유점을 갖고 있어 본격적인 아동학대 치료와 예방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아동학대에 대한 관념적인 이해가 아동학대방지활동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이번 조사의 결과에서도 확인되었으므로 법과 제도의 마련뿐 아니라 또한 가정폭력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또는 아동복지법의 개정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점은 아동학대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지는 전체체계에서 전문가들이 맡아야 할 책임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이해와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본 조사에서 교사들이 아동학대의 지각정도가 전문가 집단가운데 가장 낮게 나타난 점이라든지, 사회적 개입방법에 대해서는 일반인보다도 더 유보적이고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등은 전문가 집단에게 역할을 부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조사결과는 아동학대를 규정하는데 있어 아동에 대한 폭력적 행위자체보다 그 결과가 학대의 판단기준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아동에 대한 폭력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함의에 대한 폭넓은 인식확산 운동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부록> 방임 및 학대유형별 변수의 요인분석결과\*

\* 제시된 행렬표는 본조사 자료에 대한 요인분석결과이다. 예비조사결과대신 본조사 결과를 제시하는 것은 후속연구에 있어서 본 연구의 연구틀을 그대로 차용할 경우 문항별 요인부하량이나 고유가 등에 차이가 예상되는데 본 연구의 성격이 아동학대의 개념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해석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이다. 이 연구에 있어서도 본조사 결과는 예비조사시의 요인분석결과와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하위유형별 누적분산은 각각 80%이상으로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었으나 예비조사에서 1.0 이상이었던 각 유형의 하위요인 고유가 일부가 1.0 미만으로 나와 조사대상에 따른 편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방임의 하위 요인 4, 5; 신체적 학대의 하위요인 5; 비언어적 정서 학대의 하위요인 3; 언어적 정서학대의 하위요인 3, 4 등에 관해서는 후속연구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요인 부하량에 있어서도 방임의 2개 하위요인과 신체적 학대의 1개 하위요인은 부하량이 중복적재된 문항이 있었다.

<부표 1> 방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적각회전 요인유형 행렬표)

문항내용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밤늦도록 집밖에 내버려둠 일몰시까지 혼자 집을 보게 함	.3670 .0454	.2257 .2040	.0434 .3668	.7987 .7737	.0975 .1891
명백히 아파도 내버려 둠 더러운 이불이나 옷을 입힘 제때에 식사를 주지 않음	.5692 .4199 .1792	.2312 .2712 .3359	.6003 .6901 .7579	.2176 .2038 .1716	-.0182 .1375 .2625
이유없이 결석해도 아무말안함 숙제를 안해도 알지 못함	.7152 .2965	.3236 .2915	.3265 .2278	.1655 .2382	.1699 .8051
나쁜 책, 비디오를 보아도 아무말 안함 몰래 돈이나 물건을 훔친 것을 모른체 함	.7909 .7966	.2395 .3174	.1746 .2235	.2035 .1423	.3158 .1051
도움을 청할 때 무시함 약속을 잊거나 무관심함 친척에게 수일 맡기고 외출하여 연락안함 자녀의 고민, 슬픔, 기쁨을 거의 모름	.3990 .1995 .3199 .2465	.6400 .7851 .6881 .7411	.3863 .2385 .3152 .1001	.1361 .1958 .1868 .1934	.0322 .1753 .0431 .3323
고유가 누적분산	7.4684 .5745	.9053 .6441	.8132 .7067	.6952 .7602	.5354 .8013

요인1: 안전소홀,

요인2: 건강관리소홀,

요인3: 학교생활무관심,

요인4: 비행방조,

요인5: 애정소홀

<부표 2> 신체적 학대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직각회전 요인유형 행렬표)

문항내용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점점 더 흥분하면서 매질함	.2434	.2924	.6251	.1275	.4744
매맞는 이유를 말하지 않고 때림	.4842	.2534	.6789	.1411	.1030
화풀이로 때림	.4022	.2449	.7201	.2030	.1460
술기운에 때림	.5283	.2543	.6398	.2149	.0240
잘못할 때마다 반드시 때림	.2172	.0577	.3965	.7084	.1314
잘못할 때 책등 물건을 던짐	.3127	.4367	.4556	.3997	.1860
잘못할 때 빗자루, 회초리로 때림	.0443	.2334	.0217	.8382	.1543
잘못할 때 주먹으로 위협함	.2143	.5294	.1776	.5963	.0296
잘못할 때 뺨을 때림	.3101	.7653	.2642	.2062	.1252
잘못할 때 꼬집음	.2164	.7592	.1948	.2098	.2458
잘못할 때 주먹으로 칩	.5469	.6781	.2047	.1833	.1127
잘못할 때 발로 참	.6007	.5799	.2752	.1478	.1435
잘못할 때 머리를 벽에 부딪힘	.7850	.3583	.3079	.1441	.1132
잘못할 때 팔을 비튼	.7679	.3715	.2423	.1245	.1532
맞은 부위가 붓거나 멍이 듦	.4659	.2364	.1297	.2529	.7104
머리를 때려 두통을 호소함	.5605	.2291	.2019	.2215	.6266
자녀를 때려 상처가 남	.7867	.2483	.2417	.1510	.3039
자녀를 때려 피가 남	.7659	.1880	.2294	.1823	.3644
자녀를 때려 이빨이 흔들거림	.8551	.2312	.2663	.1168	.1964
자녀를 때려 팔이 빠지거나 뺨	.8569	.1982	.2839	.1299	.1811
자녀를 때려 기절함	.8789	.2009	.2613	.1311	.1318
걸지 못할 정도로 때림	.8525	.2091	.2734	.0980	.1590
고유가	13.7999	1.7848	.9067	.8911	.6461
누적분산	.6273	.7084	.7496	.7901	.8195

요인 1: 이유없는 감정적 구타  
 요인 3: 훈육의도의 중한 구타  
 요인 5: 학대의 결과 중한 상처입음

요인 2: 훈육의도의 경한 구타  
 요인 4: 학대의 결과, 경한 상처입음

**아동학대와 방임의 개념 및 사회적 개입에 대한 인식조사**

**<부표 3> 비언어적 정서학대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적각회전 요인유형 행렬표)**

문항내용	요인1	요인2	요인3
이유도 없이 욕설을 들음	.6410	.3899	.4054
기분에 따라 태도가 다름	.3789	.1863	.7523
화가 나 자녀말에 대꾸도 않음	.1270	.1919	.8737
잘못 없는데 짜증, 화풀이함	.3225	.2441	.7436
부모가 없어졌으면할 만큼 대함	.7434	.3760	.2939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대함	.7948	.1743	.3847
죽고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대함	.7874	.4180	.2214
집나가고 싶은 마음 들도록 대함	.6533	.4105	.3269
잘못할 때 감감한 곳에 가두어 둠	.6487	.6005	.2032
잘못할 때 옷을 벗기고 벌세움	.6128	.6707	.1488
잘못할 때 집밖으로 내쫓음	.2819	.8393	.3071
잘못할 때 자녀에게 소중한 것을 부수어버림	.4858	.6421	.3440
고유가	7.8472	1.1022	0.5062
누적분산	.6539	.7458	.7880

요인 1: 감정에 치우친 일관성 없는 태도  
 요인 3: 모욕감과 불안감을 주는 행동

요인 2: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동

**<부표 4> 언어적 정서 학대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적각회전 요인유형 행렬표)**

문항내용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팬히 낳았다	.3031	.3536	.8230	.2250
나를 부모라고 부르지 마라	.4054	.5547	.5636	.1839
너만 없으면 속이 편할 것 같다	.3777	.6780	.4271	.2592
너 때문에 다른 사람 보기 창피하다	.3118	.8053	.2708	.2629
너는 우리집의 꼴치 덩어리이다	.3423	.7428	.2628	.3380
나가 죽어라	.8006	.4088	.2308	.1843
너 때문에 내가 도망가 버려야겠다	.6027	.3896	.3360	.3835
너를 죽여버릴거야	.8688	.2699	.2340	.1520
멍청한 것, 미친 것, 원수	.7102	.2466	.2499	.4724
꿀 좋다, 잘 논다, 겨우 그거나	.2843	.3589	.2098	.8403
고유가	7.2235	.6963	.4948	.3353
누적분산	0.7224	.7920	.8415	.8750

요인 1: 거부적 언어  
 요인 3: 원망적 언어

요인 2: 적대적 언어  
 요인 4: 경멸적 언어